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3년 4월 14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2월 16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3년 4월 2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년 4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추찬식)

가. 제안 이유

고속 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케 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고속 철도 건설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를 면제함.

- 적용 시한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다. 참고 사항

조례 관련 구세 감면액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정부의 경부 고속철도 사업은 기간 산업의 능률화 및 1일 생활권의 효율화 등에 절대적인 기여로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조화 및 발전으로 충분히 검토된 사업으로서 위 사업에 대한 효과의 기대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임.

따라서 위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케 하여 지역간의 교통 편의로 기간 산업의 육성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지방세법 제7조의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자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및 같은법 제9조에 보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면제하고자 할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우리 구청장이 적용 고속철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부산직할시장이 93.1.18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 과세 면제 조례 준칙 시달시 이와 관련 사전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한 건은 내무부 세재 22670-206(92.9.16)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보고를 필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는 지시를 우리 구청장에게 하였음을 본 전문위원이 확인하였고 한국 고속철도 공단법(91.12.27 법률 제4456호) 공포에 의한 한국 고속 철도 공단은 적법 공단이며 본 구세 과세 면제 조례안에 대한 법적 구성 요건인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제21조에 대한 법 적용도 적정하고 본 사업의 목적도 기공포된 한국 고속 철도 공단법의 목적에 의하면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을 설립하여 철도 교통망을 확충키 위한 고속 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므로서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공단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법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위원	답변공무원	질의 요지	답변 요지
박한성 위원	세무 1과장 추찬식	<input type="radio"/> 남구 관내에 고속 철도 건설에 따른 감면 대상 재산이 있는지?	<input type="radio"/> 남구 관내로 고속 철도가 통과하지는 않지만 고속 철도가 외국에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관계로 항구를 끼고 있는 남구 로서는 지금 시공중인 도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물자 수송상 필요시 에 공지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사전 조례를 마련하는 것임.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